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1
----------	------

발의연월일 : 2020. 7. 6.

발 의 자 : 박대수·임이자·정경희  
윤영석·홍준표·이만희  
이태규·구자근·김선교  
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항목’에서 140여 개국 중 87위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한 원인으로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이 손꼽히고 있음.

행정관청은 국민 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의 인허가 처리 지연, 부서 간 업무협조 미비 등 소극행정 관행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17년 법제처는 비정상적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취지의 1천 5백여 건 신고 합리화 과제 입법을 추진한 바 있으나, 환경부 소관 일부 법률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무형의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규제 조항이 산재해 있음.

이에 정부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규제완화법령의 재정비 일환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민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리가 필요치 않은 신고는 접수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자 함.

따라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통지하거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제4항 신설 등).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제3항제2호의4 중 “제22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2조제3항제2호”를 “제22조제5항제2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 ③ (생략)</p> <p><u>&lt;신 설&gt;</u></p>	<p>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p>
<p>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u>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u></p>

③ (생략)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3. (생략)

2의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제5항제2호-----  
-----  
-----.

제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22조제5항제1호-----  
-----  
-----

3. 제22조제5항제2호-----  
-----  
-----

5. ~ 10. (생 략)

④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